기업애로

03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사업 확대 건의

경제상황 등으로 침체된 식품접객업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업소 확대 건의

추진부서 |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1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개선배경

-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음
  - 이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상당 부분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근본을 볼 때 지극히 제한적인 사업임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하여 감염병 경계 또는 심각단계 시 위생업소의 운영자금을 융자 가능하도록 하여 경기도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융자사업을 평상 시 수준(50억 ~ 60억)의 2배 이상인 100억 ~ 130억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수행 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품접객업 운영자금 융자(금리 1%)가 전체 융자사업의 74.1%를 차지하였고 3년간 총 1,099개소에서 운영자금 융자를 받았음
  - 2024. 5. 1.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단계가 하향으로 됨에 따라 일반 위생업소의 운영자금 융자가 중단 됨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는 1%의 금리로 지원됨에 따라 자영업자 운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일반 식품위생업소에 지원은 자금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될 경우 '소상공인지원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하나, 최저 금리 2%로 지원대상도 자금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초과인 소상공인으로서 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 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1일 이상 이수한 자 등 조건 사항이 있으며,

-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는 그 기회마저 없어짐

- '폐업률 2년째 상승세, 음식점 폐업 신고 사업자 100만 명 넘어' 등의 보도자료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5년 1/4분기 민간 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1%감소(전년동기비 0.6%증가) 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식품접객업의 운영자금 융자사업 확대는 꼭 필요한 시점임
  ※ 매일경제 "장사 접어요" 한 해 100만 명 처음 넘었다... 음식점 폐업률이 무려 (2025. 7. 6.)

개선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하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 융자사업 대상에 일반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추가 건의를 3차례 하였음

- 2025. 9. 17. 박희승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7개 시도 및 세부 시군구까지 적극적인 의견 청취를 하고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 ② (생 략)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③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업소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의견 조회 시 일반적으로는 서식에 의한 검토 의견만 받으나,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법률 개정안과 관련으로 융자사업 개선 방안을 위한 자료를 별도 공문으로 요청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
  - (2025. 9.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의견 요청, 최근 5년간 지역별 융자사업 집행 현황 요청
  - (2025. 9. 24.) 식품진흥기금 소진 현황 요청

추진과정

- 2024. 5.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하향으로 일반 식품접객업 운영자금 융자 불가
- 2024.12. 식품의약품안전처 융자사업 확대 건의(1차) ☞ **미회신**
- 2025. 6. 식품의약품안전처 융자사업 확대 건의(2차) ☞ **미회신**
- 2025. 7. 식품의약품안전처 융자사업 확대 건의(3차)
- 2025. 7.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선 연락 ☞ **17개 시도 의견 청취 후 적극 검토**
- 2025.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진흥기금 사업 확대를 위한 자료 요청

> 안녕하세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입니다.
>
> 최근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식품접객업소 대상 운영자금 융자사업 확대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품진흥기금 사업 범위를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공식적 행정 절차에 앞서 각 지자체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 **검토의견을 7.21.(월)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2025.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진흥기금 확대 건의 회신** ☞ **식품위생법 불일치**
- 2025. 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희승 의원 등 10인**
- 2025. 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의견 요청
  최근 5년간 융자사업 집행 현황 요청
- 2025. 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진흥기금 소진 현황 요청

개선효과

- 긴급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식품접객업소 폐업률 감소 가능
- 유사 사업인 '소상공인지원자금'금리(2%)에 비해 낮은 금리(1%) 및 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실질적으로 영세하거나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제에 지정받지 못한 업체를 지원하여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 도모



Interview

현장이 우선인 제도 / 경기도

경기도 식품안전과 김연주 ☎031-8008-3671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문을 닫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던 식당 사장님들의 전화가 아직도 생생하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때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는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었다. 경기도는 평상시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융자를 확대했고, 3년간 1,099개 업소가 그 손을 잡았다.

융자사업의 74.1%가 시설이 아닌 운영자금을 위한 지원이었다는 사실은, 현장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감염병 2024년 5월 감염병 단계가 하향되자, 제도는 다시 멈췄다. 법은 위생시설 개선만을 허용하고 있었고, 현장의 어려움은 법의 문턱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폐업률은 오르고, 소비는 얼어붙고, “장사를 접는다”는 말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어갔다.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있었지만, 기준과 조건에 닿지 못한 영세 업소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 안에도 또 다른 기준과 문턱이 존재했다. 최저 금리 2%, 교육 이수 요건,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는 법적 범주에 들지 못하면 그마저도 신청할 수 없는 현실. 결국 가장 영세하고 가장 취약한 업소들이 다시 제도의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사각지대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기에 실제로 어떤 업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정리하고, 코로나 시기의 성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붙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한 번의 회신이 없으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전화로, 공문으로, 다시 설명하며 “이 제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때가 되어서야 식약처는 전국 시도의 의견을 다시 묻고, 자료를 요청하며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직 법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고, 제도는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분명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제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 운영자금 융자가 다시 일상적인 제도로 자리잡기까지는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다시 ‘사람을 향한 제도’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사실이다. 긴급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한 가게, 그 불을 끝내 끄지 않게 하는 일이 결국은 지역경제를 지키고, 식품위생의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배웠다.

오늘도 한 장의 공문과 한 통의 전화가 또 다른 하루를 바꾸고 있다.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식탁과 삶을 지탱하는 행정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이 다시 현장으로 흐르는 그날까지, 우리 경기도는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봅니다.